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 안 번 호	제3403호

제출년월일 2024. 2. 23.
제 출 자 김 포 시 장

1. 심사경과

❍ 본 안건은 2024년 2월 23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❍ 만 나이로 법적·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만 나이 표시 원칙을 규정한 ‘만 나이 통일법’ 시행(’23.6.28.)으로,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게 자치법규 내 나이 규정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김포시 자치법규(조례) 내 나이 규정 중 ‘만’ 용어 삭제

4. 검토의견

❍ 본 조례안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표시 원칙을 규정한 「행정 기본법」 제7조의2에 따라 자치법규 내 만 나이 표시를 일괄 정비하는 사안으로,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